#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병도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9839

발의연월일: 2025. 4. 15.

발 의 자:한병도·김성환·위성곤

이정문・김 윤・김병주

이정헌 • 정일영 • 진선미

이재강 • 박정현 • 양부남

의원(12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통령당선인이 대통령직 인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업무·구성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대한민국헌법」 제68조제2항에 따라 대통령의 궐위 등으로 인한 선거로 당선되는 대통령의 경우, 임기가 즉시 개시되어 현행법에 따른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설치할 수 없는 등 대통령직 인수를 위한 업무 지원을 받는 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대한민국헌법」 제68조제2항 및 「공직선거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실시된 선거로 당선되어 「공직선거법」 제14조제1항 단서에 의해 임기가 개시되는 대통령이 임기 개시 후 45일의 범위에서 국정인수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대통령당선인과 마찬가지로 국무총리 후보자의 추천으로 국무위원 후보자를 지명할 수 있게하여 입법의 미비를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17조 등).

#### 법률 제 호

#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을 "(대통령직 인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조 중 "대통령당선인으로서의 지위와 권한을 명확히 하고 대통령 직 인수를"을 "대통령당선인의 대통령직 인수와 대통령 궐위 등에 따른 선거로 당선되어 임기가 개시되는 대통령의 대통령직 수행을"로한다.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대통령 궐위 등에 따른 선거로 당선되어 임기가 개시되는 대통령에 대한 특례) ① 「대한민국헌법」 제68조제2항 및 「공직선거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실시된 선거로 당선되어 「공직선거법」 제14조제1항 단서에 의하여 임기가 개시되는 대통령은 제7조에 따른 위원회의 업무에 준하는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임기 개시 후 45일의 범위에서 국정인수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국정인수위원회에 관하여는 제8조부터 제16조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국정인수위원회"로, "대통령당선인"은 "대통령"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대통령이 지명한 국무총리 후보자는 국무위원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국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의3제1항 단서 중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을 "「대통령직 인수 등에 관한 법률」"로 하고, 제65조의2제2항제2호 중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을 "「대통령직 인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 ②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다목 및 제11조제1항 단서 중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을 각각"「대통령직 인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 ③ 방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제1항제6호 중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대통령직 인수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또는 제17조에 따른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또는 국정인수위원회"로 한다.

④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6호 및 제19조제1항제6호 중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각각 "「대통령직인수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또는 제17조에 따른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또는 국정인수위원회"로 한다.

⑤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6호 및 제10조의2제1항제6호 중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각각 "「대통령직인수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또는 제17조에 따른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또는 국정인수위원회"로 한다.

⑥ 인사청문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 중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을 "「대통령직 인수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⑦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6호 중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대통령직 인수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또는 제17조에 따른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또는 국정인수위원회"로 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혀 행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통령당선
인으로서의 지위와 권한을 명확히 하고 대통령직 인수를 원활하게 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정운영의계속성과 안정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u><신 설></u>

개 정 안

대통령직 인수 등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대통령당선
인의 대통령직 인수와 대통령
궐위 등에 따른 선거로 당선되
어 임기가 개시되는 대통령의
대통령직 수행을-----

\_\_\_\_\_

-.

제17조(대통령 궐위 등에 따른 선거로 당선되어 임기가 개시되는 대통령에 대한 특례) ①
「대한민국헌법」 제68조제2항 및 「공직선거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실시된 선거로 당선되어 「공직선거법」 제14조제 1항 단서에 의하여 임기가 개시되는 대통령은 제7조에 따른 위원회의 업무에 준하는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임기가 개시가 후 45일의 범위에서 국정인수위원회를 설치・운영

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국정인수위원회에 관하여는 제8조부터 제16조까 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 회"는 "국정인수위원회"로, "대 통령당선인"은 "대통령"으로 본다.
- ③ 제1항에 따른 대통령이 지 명한 국무총리 후보자는 국무 위원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다.